# 인천광역시서해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구 보

http://www.seohae.go.kr

| 선 | 기관의장 | | |
|---|---|---|---|
| 람 | | | |

제2042호 2026. 10. 30.(금)


## 차 례

**공 고**


○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161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——— 1



**발행 : 인천광역시서해구** **편집 : 홍보정책과 [032-560-4142]**

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-2161호

#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, 「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. 10. 30.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○ 개정이유

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 편성·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난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가.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및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통합 편성·운영 근거 마련(안 제7조)

나.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정비 (안 별표 1, 안 별표 2)

○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(참조: 안전총

괄과, 전화 560-4702, 팩스 560-2735, 이메일 khg960407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○ 참고사항

- 「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이유

○ 재난현장의 통합대응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,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개정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○ 통합지원본부 운영체계의 운영기준 정비(안 제7조)

○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정비(안 별표 1)

○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주요임무 정비(안 별표 2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　　의: 감사실, 가정보육과와 합의

라. 기　　타: 해당사항 없음

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

#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공보관”을 “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·소통 전담팀, 공보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와 같은”을 “각 호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

⑤ 통합지원본부장은 「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·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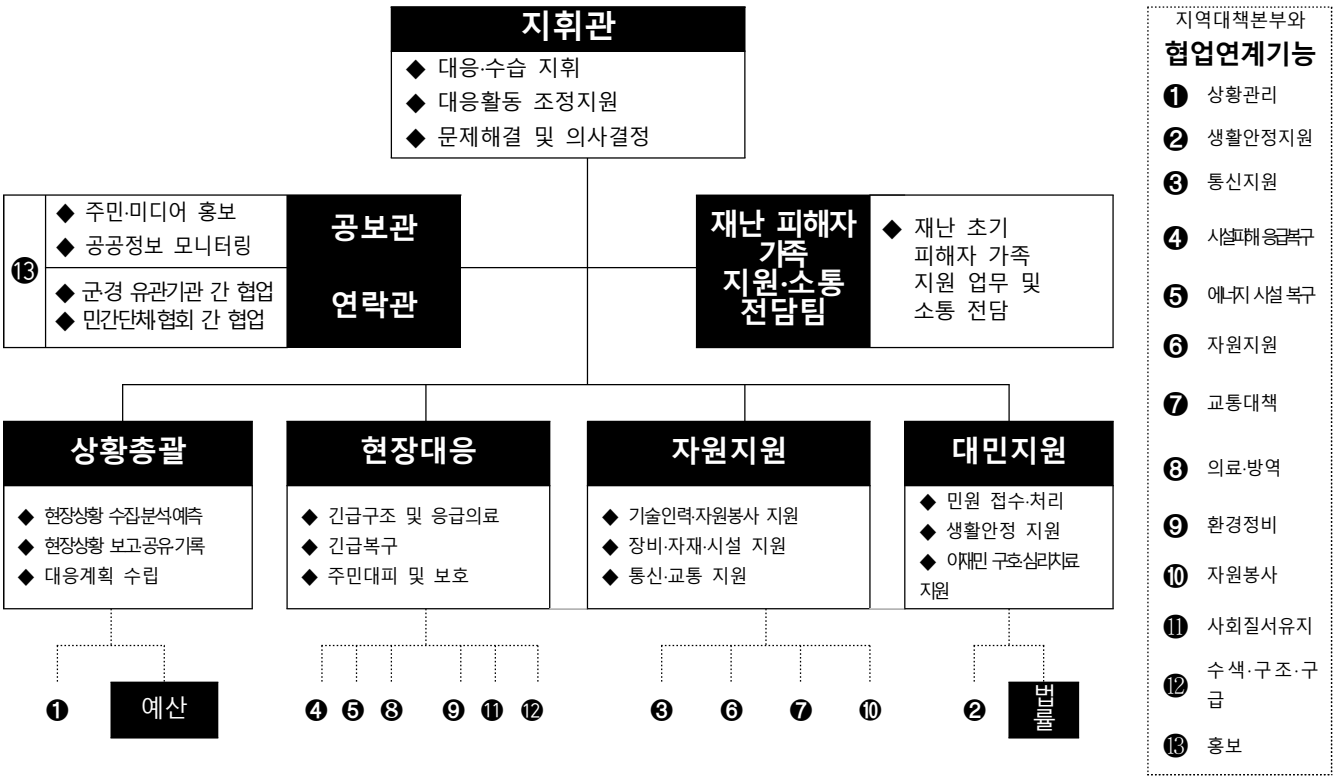
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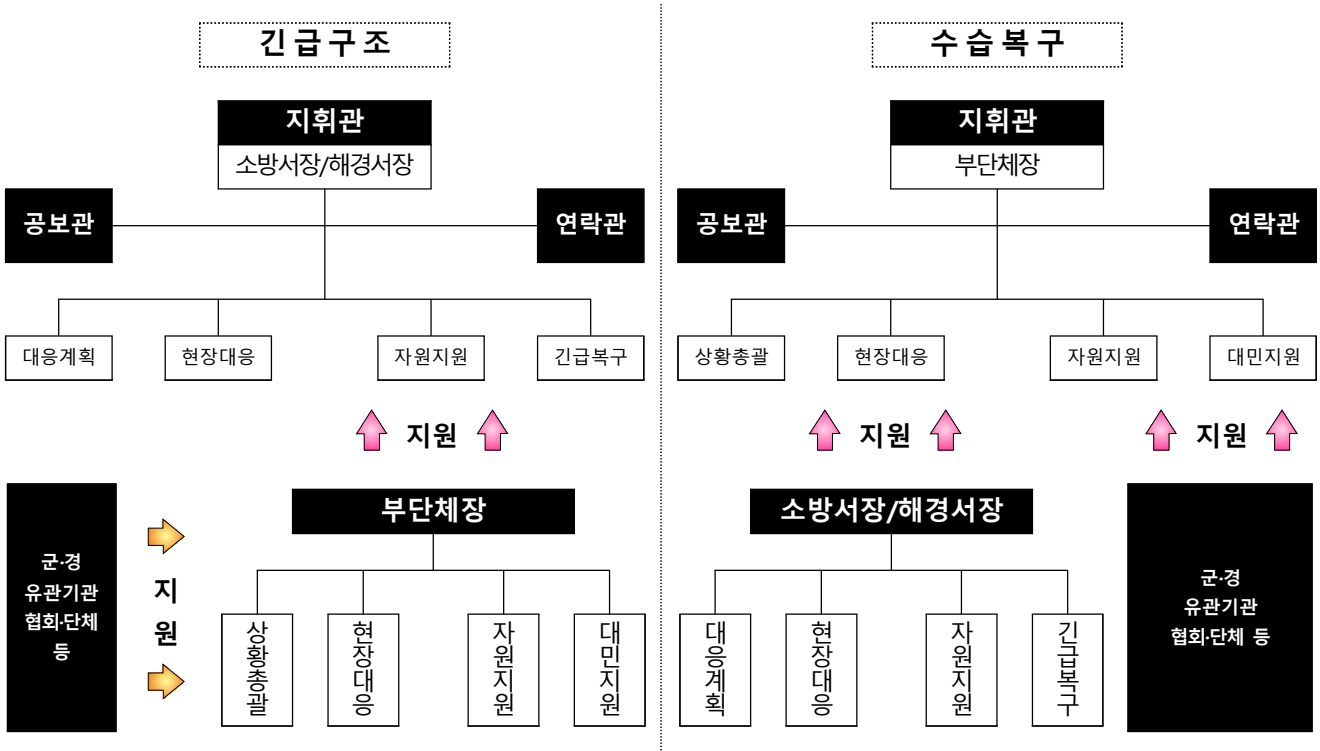
[별표 1]

#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(제7조 관련)

## □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




## □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



[별표 2]

#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(제7조 관련)

| 구 분 | 주 요 임 무 |
|---|---|
| 통합지원본부장<br>(지휘관) | • 현장대응·수습 총괄<br>•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·물자·인력 등을 지원<br>•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·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|
|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·소통 전담팀 | •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<br>•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|
| 공보관 | • 주민 미디어 홍보<br>• 공공정보 모니터링<br>• 대응단체 정보공유 |
| 연락관 | • 군·경·유관기관 간 협업<br>• 민간단체·협회 간 협업 |
| 상황총괄반 | • 통합지원본부 운영<br>• 현장 상황정보 수집·분석·예측<br>• 현장 상황정보 보고·공유·기록<br>•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 수립<br>•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·수습 상황 보고 |
| 현장대응반 | • 시설 응급복구<br>• 에너지 복구<br>• 의료·방역(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)<br>• 환경정비<br>• 사회질서 유지 및 수색·구조 지원 |
| 자원지원반 | • 긴급통신 지원<br>• 현장대응 자원 지원<br>• 교통대책<br>• 자원봉사 지원 |
| 대민지원반 | •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<br>• 생활안정지원<br>• 이재민 구호·심리 지원<br>• 장례 지원 등 |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7조(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) ① ~ ③ (생 략) | 제7조(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, 연락관, 상황총괄, 현장대응, 자원지원,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,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. | ② ----------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·소통 전담팀, 공보관 ----------. |
| ③ (생 략) | ③ (현행과 같음) |
|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 | ④ ---------- 각 호의 ----------. |
| 1. ~ 6. (생 략) | 1. ~ 6.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7.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|
| 7. (생 략) | 8. (현행 제7호와 같음) |
| <신 설> |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「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・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|

| | |
|---|---|
| | 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 |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**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**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시·도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시·군·구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②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③ 시·군·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“통합지원본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·군·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>

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 [전문개정 2010. 6. 8.]

#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□ **법규명** :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성명(단체명) :
2. 주 소 :
3. 전 화 번 호 :

| 조례안 내용 | 찬성여부 | | 의 견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| 찬성 | 반대 | | |
| | | | | |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제출자 : (서명 또는 인)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